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8. 4. 2.



運 營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김기중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본 조례 개정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이 발생되어 기존 조례상 인용된 법조문을 변경된 법조문 및 제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로 개정하는 것임.

## ■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 (안 제1조)
-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으로 정하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안 제6조)

## 검토의견

- 이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4. 2.

보 고 자 : 김 병 욱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檢 討 報 告 書

2008. 4. 2.



運 營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김기중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1998.1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문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면서 전문위원의 확충 등 사무국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어 사무국 조직을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개정내용

- 제3조를 제4조로,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하부조직)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
- 제4조(전문위원)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 검토의견

- 이 건의 개정 규칙안은 사무국장 밑에 하부조직을 규정하였고 별표1의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4. 2.

보 고 자 : 김 병 욱

#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